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1. 이의신청 대상 · 방법

- **(이의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하여 지급을 받은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미동의하여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는 가능)

-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제출 불필요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가능, [별첨1] 참조)

-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서식1>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신청

- * ①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②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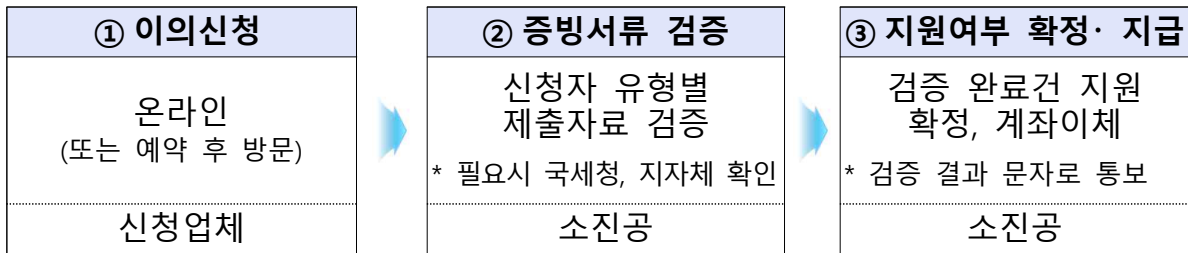
- ** 예약방법(택일) : 1)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2)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 ※ 검증 과정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2. 이의신청 절차·기간

- **(절차)**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검증 (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이의신청 처리절차】



- **(기간)** 온라인·예약 후 방문 신청 (8.17(수) ~ 8.31(수))

- * 방문신청 예약은 8.16(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 18:00
- * 방문장소 :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별첨2]

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4. 신청 문의

- **(전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별첨1]

【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지원불가(부지급) 사유	증빙서류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1.12.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1.12.31. 기준 폐업	○ 폐업 사실 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지원제외업종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계좌인증실패 포함)	○ 보완요청서류 일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수급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신청유형 미해당**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만 해당
영업사실 확인 불가***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포함)	○ 주민등록등본[필수] ○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 '21년도의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영수증

* 매출액 감소요건을 미충족한 사업체 중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지원유형(지원금액)을 상향신청 하는 경우

** 확인지급을 통하여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신청 하였으나 미인정 된 경우

*** 매출감소 비교기간인 '20, '21년 신고매출액 등이 부재하여 영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첨2]

【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 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성동구,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중랑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경문빌딩 406호	동작구,용산구,마포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구로구,금천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강원도 원주시 호서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12층(중앙동3가, 부산우체국)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101	부산광역시 북구 기차로 12 이수타워 9층	부산시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연산동, 프라임시티) 6층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8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광안동) 부산은행 광안지점2층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지역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97 5층 소상공인지장진흥공단 울산남부센터	울산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문해거리 28 2층 소상공인지장진흥공단 울산북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중앙동,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경남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원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41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79-3번지, 경남은행 서부영업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부원동, 김해상공회의소) 1층	경남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102길 2 (동산동, 우리은행)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 북구 옥산로17길 14 (철성동2가, 철성동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동,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죽도동, 신한은행) 4층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양동, 케이디비생명보험(주)) 21층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두암동)	동구, 북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7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남악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신대리) 5층	전남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전남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4층 (경제통상진흥원빌딩)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센터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3층	전북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연지동) 기업은행 3층	전북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중앙로2가) 흥국생명빌딩 301호	전북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남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	주소	관할구역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3호	인천광역시, 경기북부지역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 (하안동 651-1)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동, 구성타워빌딩),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심곡동), 부천상공회의소 1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2-2066-6348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운프라자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오류동) 동아생명빌딩 1층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충남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충남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동문동, 서산시 2청사) 2동 2층	서산, 태안, 당진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219번길 37 (가경동, 신한은행) 3층	충북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본관동)) 11층	충북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화산동, 제천시문화회관) 2층	충북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 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문정리) 옥천읍사무소 3층	보은, 옥천, 영동
(충남)아산센터	(043)549-539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층 202호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서식2> 해당 시(확인지급 서류 보완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위임장

①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법인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 해당하는 <input type="checkbox"/>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사유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_____)			

②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③ 위임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	○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④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소기업도 해당)
- ②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④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필수) 통합위임장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온라인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온라인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온라인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온라인
	①-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②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매입세액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 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필수)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④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 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④-③ 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공과금 지출내역	·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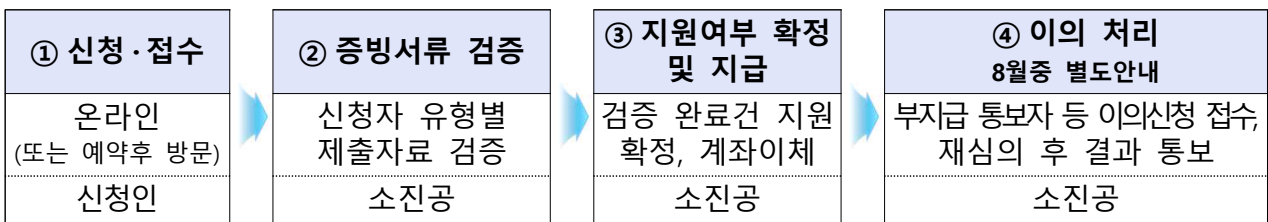
-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준용)
-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7월 이후)

2. 확인지급 절차 · 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6. 13. ~ 7. 29.)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②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③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소기업도 해당) ②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③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④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

① (대상여부 확인)*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음)

②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2.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 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참고1, 참고2, 참고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참고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참고4)
-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
'19년	'21년	45%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참고3)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참고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 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참고3)

3.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times 100\%) + (600 \times 50\%) = 1,300$ 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times 100\%) + (700 \times 50\%) + (600 \times 30\%) = 1,330$ 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times 100\%) + (800 \times 50\%) + (700 \times 30\%) + (600 \times 20\%) = 1,730$ 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차액지급

- (차액지급) 지원유형 변경, 다수사업체 추가 등에 따라 총 지원 금액 변경시 기지원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차액지급 산출방식 예시】

- 상황
 - 甲은 사업체 A와 B를 보유, 신속지급시 A는 800만원, B는 600만원으로 책정
 - 甲은 신속지급으로 A와 B에 책정된 지원금을 받은 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①B의 지원금액을 700만원으로 변경하고 ②1,000만원으로 책정된 C업체를 추가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 지급액 산정 변경 : **1,100만원** [(A)(800만원 × 100%) + (B)(600만원 × 50%)]
→ **1,610만원** [(C)(1,000만원 × 100%) + (A)(800만원 × 50%) + (B)(700만원 × 30%)]
- 최종 지급차액 : **510만원**

5.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참고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非公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참고 1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2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60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천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400억원 이하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19.12월~ '20.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12월~ '21.5월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월~ '21.10월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월~ '21.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

참고 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영화관 운영업	욕탕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식장업

참고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필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제1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서 1

<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2

<제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3

해당 시

<제4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위임장 4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제5호>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5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① (필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본인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계 융자지원, 행정 정보 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② (필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③ (필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정보통신(주)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제공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본인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계 융자지원, 행정정보 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④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을실확인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 (필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자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오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필수)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약약합니다.

-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필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정청구 시 반납동의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부정청구금액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3. 신청정보 오류, 신청 시 신청자의 과실 등 기타 그 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잘못 수령한 경우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필수) 기 지원받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복수급·오지급·부정수급 시 상계처리 동의

본인은 기 지원 받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2차 방역지원금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호에서 기 지급한 금액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2차 방역지원금 등)이 중복 또는 오지급된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함에 있어 2022년 제2차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아래표의 중복수혜금지 대상)과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복수혜금지 대상]

기관	명칭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령자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제출시에만 지급 가능 (세부내용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사업명칭은 추후 부처별 공고에 따라 변경 가능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6 (선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동의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손실보전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통합위임장

①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 해당하는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사유에 "√" 표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_____)

②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③ 위임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	○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5호 서식> 해당 시

(지역별 이행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서울종로-0000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시설 유형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장 명의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
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
'19년	'21년	45%	

②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붙임3)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 **붙임3**)

2.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times 100\%) + (600 \times 50\%) = 1,300$ 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times 100\%) + (700 \times 50\%) + (600 \times 30\%) = 1,330$ 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times 100\%) + (800 \times 50\%) + (700 \times 30\%) + (600 \times 20\%) = 1,730$ 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불임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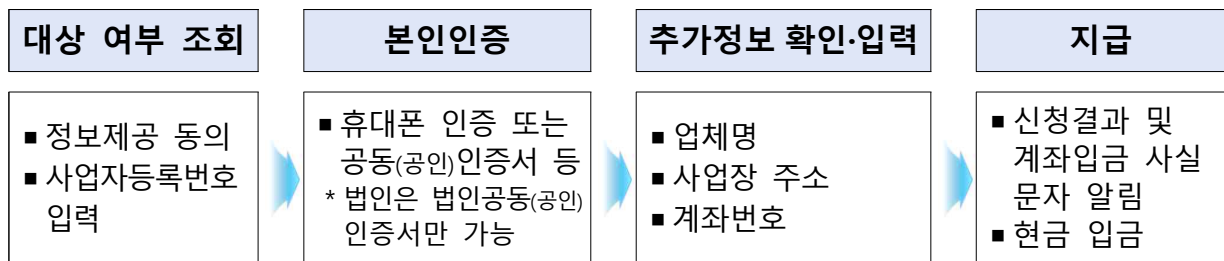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
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1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②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③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붙임 1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6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천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400억원 이하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19.12월~ '20.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12월~ '21.5월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월~ '21.10월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월~ '21.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영화관 운영업	욕탕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식장업

붙임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